

제 289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10.23.)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1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문화예술과	1
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문화예술과	6
3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9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4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20
6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25
7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교육과	32
8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인구교육과	42
9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인구교육과	45
10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50
11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55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경제기업과	61
13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64
14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나눔과	70
15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나눔과	76
16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공모 신청 보고	전략담당관	-
17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조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전략담당관	79
18	2025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	재 무 과	-

거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10. 10.

나. 발 의 자: 신미정 의원 대표발의(11명)

(신미정,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거창군에는 화강석 조형물을 비롯해 지역을 상징하는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있음에도 관리 체계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제외(안 제1조~제3조)

나. 건립대상 선정기준(안 제4조)

다. 사전 타당성 조사(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의무 등,
위원회의 운영(안 제6조~제9조)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 공공조형물의 활용(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문화예술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29. ~ 10. 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2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필요시 예산지원 가능함.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최근 공공시설 내 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유지관리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난립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안 제1조 목적에서 안 제11조 공공조형물의 활용까지 총 11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 및 건립·관리 기준 마련
제2조 (정의)	• 공공시설, 공공조형물, 건립주체 등 용어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 임시 전시·홍보 목적의 조형물은 제외
제4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 공공성, 역사성, 장소 적합성, 안전성, 주민 공감도 등
제5~6조 (심의 절차)	•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 작성 후 위원회 심의
제7~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군수 위원장, 전문가·주민대표·의원 등 10명 이내
제10조 (관리 및 점검)	• 2년마다 상태점검 및 연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제11조 (활용 지원)	• 교육·관광·홍보 등 활용 사업에 예산 지원 가능

○ 안 제1조는 공공조형물의 난립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경관 보호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됨.

○ 안 제2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가 잘 이루어져 있고, 공공조형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함.

- 안 제4조는 공공성, 역사성, 안정성, 주민 공감도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형물 설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상징조형물에 대해 역사적 고증과 주민 공감도를 요구하는 점은 사회적 논란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거창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전문가, 주민대표, 의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 회의 때마다 위촉하는 방식은 유연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적 번거로움과 연속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로써, 위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별도로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기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하여 유지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으며, 활용 촉진을 위한 예산지원 조항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공공조형물의 해체·이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보완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구체적 절차(공청회, 설문조사 등),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건립계획서, 관리대장 등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공조형물이 대부분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훼손 또는 파손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형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서 철저한 점검 및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5.(생략)

② ~ ④ (생략)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2) 대 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1,638,584,000원
 - 2026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6년	1,426,125	1,638,584	1,638,584	-	-	1,638,584	

4)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11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나. 부서의견

- 1)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 이후 운영 10년 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등 기획·운영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
- 2)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거창군의 문화예술 정책을 전문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거창문화재단에 2026년도 군비 1,638,584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거창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
- 예산 개요 및 증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요구액	2026년 반영액	증 감 액	주요 증감 사유
총 계	1,426,125	1,775,545	1,638,584	212,459	인건비 상승, 시설 유지비 증가 등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요구액	2026년 반영액	증 감 액	주요 증감 사유
인 건 비	657,443	773,599	747,758	90,315	신규 채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상승률 반영
경상경비	768,682	1,001,946	890,826	122,144	공공요금 인상, 장비 교체, 예매시스템 개발 등

-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예산 증가 추세이며, 2026년은 전년 대비 약 13.5% 증액되었음.
- 세부사항 중 인건비 상승률 반영은 공공기관 운영의 일반적 추세이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연극제 전문인력 조정 등 재단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항목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약 15% 내외 증액 추세로, 운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증액으로 보이며, 인건비와 경상경비 지원은 필수 운영비로써 낭비성 지출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만큼 재단의 전문성과 고유 기능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거창문화재단은 2017년 1월 경남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재단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연·전시 관람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 향유 기반 마련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 이에 따르는 안정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재단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 생각됨.

거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관 협력 위원회로 구축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함(안 제9조~제16조)
 - 1) (현행) 군정조정위원회 대행
 - ⇒ (변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적 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2)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 3)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 간사, 운영세칙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20조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1,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5. ~ 9.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2조)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관 협력 위원회로 구축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20조

☐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안 제14조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발생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주요 변경점
제2조	군정조정위원회가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결정	결정 주체 변경
제9조	군정조정위원회가 기능 대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직접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실질적 설치 및 기능 강화
제10조~제16조	없음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운영, 간사, 운영세칙 신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제10조(현행) → 제17조(개정안)	위탁 조항	동일 내용, 조항 번호 변경	단순 위치 조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음.

○ 기존에는 군정 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능을 대행했으나, 개정안은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심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화 및 독립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의제4항에서 시민사회단체, 학계, 청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11조 제척·기피·회피 조항 및 안 제12조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 및 위원 자격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성범죄 관련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 가능하도록 명시한 점은 공공기관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조치라고 생각됨.
- 안 제14조에 회의 소집, 의결 요건, 간사 지정 등 운영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였음.
-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청년단체 언급은 있으나, 성별 균형이나 장애인 등 포용적 구성에 대한 명시로 성별과 세대의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고,
- 회의록 공개, 군민 참여 절차 등 민주적 운영을 위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및 설문 참여 주민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개선함(안 제8조)
 - 1)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 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의무화
- 나.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 행정지원을 정함(안 제17조·제22조)
- 다. 현행 제안자 중심의 포상 범위를 설문 참여자까지 확대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안 제2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1,5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22.~9.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재정법」 제3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안 제17조, 안 제21조에 따라 회의 수당과 보상금 발생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개선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주요 변경점
제8조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우선 검토해야 한다"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성 강화
제16조	제17조	제16조	단순 위치 조정
신설 제17조	없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설치 근거 마련	정책 연구 및 교육 기능 강화
제18조	제6조제2호	제6조제4호	지역회의 관련 조항의 참조번호 변경
제21조	없음	제21조제3항 신설	포상 조항에 주민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추가
제22조	행정지원 조항	"연구회" 추가	연구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 명시

○ 안 제8조제3호의 "우선 검토할 수 있다"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로 변경함으로써,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가 단순 권고에서 사실상 의무로 강화하여 예산편성 시 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음.

○ 안 제17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을 신설한 것은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로 보여지며, 연구회 구성 및 운영을 군수에게 위임하되 내부 규정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18조의 참조 조항 수정(제6조제2호 → 제6조제4호)은 법령 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으로 보임.

○ 안 제21조제3항 신설로 주민제안 및 설문 참여자에게 상품권 지급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었으나,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22조에서 “연구회”를 행정 지원 대상에 포함해 행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새롭게 신설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였으나,
- 회원 수, 자격 요건, 임기 등 기본 틀에 대한 명시가 없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 또한, 연구회와 기존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정립도 필요해 보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제목개정 2020. 3. 3.]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 기구인 ‘도민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가. 한시 기구를 신설함(안 제29조)
 - 1) 분장사무: 도민체전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 2) 존속기한: 2028. 12. 31.
- 나. 한시 정원을 신설함(안 제30조, 별표 5)
 - 1) 한시 정원 총수: 일반직 8명
 - 가) 5급 중 1명
 - 나) 6급 이하 중 7명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66백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26.~9.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 업무 추진을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8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재정부담 여부 : 2026년 예산 566백원 확보예정

- 개정안 제30조에 한시정원(8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 정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내 용	주요 변경점
신설 제29조	도민체전기획단 설치(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목적성 명확, 존속기한 설정
신설 제30조	도민체전기획단의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5에 따름	인력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

○ 도민체전이라는 대규모 행사이면서 4개 군 공동 개최에 따라 행사를 준비·운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으로써 기구의 일시성과 예산·인력 운용의 계획을 확보한 점은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부합함.

○ 안 제29조에서 기획단의 사무를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기획단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기존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 경기 운영 및 체육시설 정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인력 구성 시 관련 직렬의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조의 제목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5조~제7조)
- 나. 표창장의 제외 신설함(안 제5조의2)
- 다. 공적심사 절차 개선함(안 제9조의2, 제11조)
 - 1)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 및 포상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생략
- 라. 포상의 취소 신설함(안 제11조)
 -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
 - 2)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친 후 취소, 부상품 등 환수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4.~9.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심사 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를 신설하기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이번 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 부담은 없음.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생략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포상 취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주요 변경점
제2조	적용범위만 규정	포상의 원칙+이중포상 금지 명시	포상 기준의 명확화 및 중복 방지
제5조	표창장 수여 요건	동일 내용, 조문 제목 변경	용어 정비 (요건 중심 표현)
신설 제5조의2	없음	표창장 제외 대상 명시	부적격자 사전 배제 근거 마련
제6조~ 제7조	감사장·상장 수여 요건	동일 내용, 제목 변경	일관된 조문 체계 정비
제9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긴급 시 생략 가능	상장 심사 생략 가능 명시	실무 간소화 및 예외 명확화
제11조	이중포상 금지	포상 취소 및 환수 절차 신설	사후 관리 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안 제2조 개정으로 포상의 원칙과 이중 포상 금지를 명시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 안 제5조의2 신설로 징계 이력자, 불문경고 대상자 등 부적격자의 포상 대상 제외를 명문화함으로써, 포상의 신뢰성과 도덕적 기준을 높였으나, “군수가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포괄 규정은 유연성은 있으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요건”이라는 표현으로 조문 제목을 통일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가독성이 향상되었음.

- 안 제9조의2에서 상장에 한해 심사 생략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실무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을 반영하였음.
- 안 제11조에서 포상 취소 및 환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전반적으로 포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5. 7. 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 「정부 표창 규정」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0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8조(추천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할 때 「상훈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표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상을 추천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창 대상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그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군인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2024. 1. 1.)

P26

다.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

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이하 생략~

거창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도민 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도민연금 운영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재정지원을 정함(안 제5조)
- 라. 정보제공 및 처리, 위임 및 위탁, 준용을 정함(안 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 17,640천원 편성계획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10. ~ 9.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정부담 여부 : 2026년도 예산 17,640천원 편성계획

- 조례안 제5조 재정지원에 따른 경비 발생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도민 연금의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거창군민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민연금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정의)	도민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군수와 금융기관이 협약하여 운영 - 소득 공백기: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무소득 기간 - 노후준비: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개념 지원금: 거창군 및 경상남도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제3조 (군수의 책무)	도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책임.
제4조 (운영 방식)	가입 대상, 신청 절차, 부담금 및 지원금 적립·지급 등은 “도조례”에 따름
제5조 (재정 지원)	군수는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6조 (정보 제공 및 처리)	가입자의 정보(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를 관련 기관이나 위임자에게 제공하거나 받아서 업무 처리 가능
제7조 (위임 및 위탁)	도민연금 운영 및 정보 처리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가능.
제8조 (준용)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도조례를 따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 안 제1조에서 정한 내용을 보면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를 위한 도민연금 제도 운영 및 지원이라는 목적이 명확하며, 고령화, 정년 이후 소득 단절 문제 등 사회적 필요성에 부합함.

○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도민연금,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에 대한 용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정의를 인용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제도의 지속적·안정적 시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의무화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4조에서 가입 대상, 신청 절차, 부담금 및 지원금 등은 경상남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위 조례와의 정합성 유지로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나, 세부 운영 기준이 군 조례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주민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도 조례를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음.
- 안 제5조에서 군수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은 미비하므로 예산 편성 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안 제6조에서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필요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보 제공 및 위탁 시 법적 절차(동의, 목적 명시 등)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조에서 운영 및 정보 처리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안 제8조에서 미규정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도 조례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 방지 및 해석 기준을 제공하였음.
-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로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임.

- ▶ 전국 최초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연금지원'제도
- ▶ 매년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지원
- ▶ 2026년부터 경남도는 연 1만명 모집 10만명 목표, 도민연금기금 조성 계획
- ▶ '경남도민연금 조례'제정, 법적기반 마련

○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임. 퇴직하면 노동자들은 3년간 소득 공백기에 처하고, 2033년에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5년이나 됨.

-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 지원대상: 40세~54세 거창군민 중 일부(2024년 기준 약 147명 추정)
 - 지원방식: 도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 1만원씩 군비로 지원(도비 1만원 별도)
 - 관련조문: 제4조(운영), 제5조(재정지원)

(단위:천원)

연도	가입자 수 누적(명)	연간 예산	누적 예산
2026	147	17,640	17,640
2027	294	35,280	52,920
2028	441	52,920	105,840
2029	588	70,560	176,400
2030	735	88,200	264,600

○ 군비는 연평균 약 52,9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47명씩 추가되므로 예산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며, 도 전체 10만 명 유지 계획에 따라 거창군의 부담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민연금을 가입을 통해 군민들에게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30.] [제정 2025-09-30 조례 제59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가입대상 및 가입신청) ① 도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소득 등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입자 모집 및 선정 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가입자 모집) ① 도지사는 도민연금 신규 가입자를 매년 모집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모집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도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 납입) 가입자는 개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본인의 도민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적립) 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상실 여부, 납입액 등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도 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지원금은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적립한다.

제8조(지원금 적립 중지) 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다.

1. 도민연금을 해지한 때
2. 사망한 때
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6. 도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된 때. 이 경우, 도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적립하며, 도에 주민등록을 다시 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적립을 재개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이 중지된 경우에는 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지원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적립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에서 먼저 도달한 때 지급한다.

1. 도민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된 때
2.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3.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한 때

② 도지사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위임·위탁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정보제공 및 처리)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위임·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도민연금 운영의 연속성 담보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14조(통합기금 예탁)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기금 관련 분야 실국장 또는 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도민연금 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도민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제18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거창군장학회 2026년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다양한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 교육여건 개선 사업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거창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 요

- 1) 근 거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출 연 금 : 3,3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편성액	2026년 요구액	증감
계	3,394	3,394	-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169	169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0	250	-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60	60	-

3) 내 용

- 맞춤형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169백만원)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250백만원)
-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60백만원) ※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학기금 확대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26년도에 총 3,394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임.

- 출연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25년 편성액과 동일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요구액	주요 내용
계	3,394	
장학기금 확대	2,250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 기반 마련
장학사업 추진	665	원어민 영어교사, 국제교류 등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169	지역산업 연계 기술인력 양성

구 분	2026년 요구액	주요 내용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0	학비 부담 완화 및 인구 유입 유도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60	교육발전특구 사업 일환

- 본 출연안은 지역 교육환경 개선, 인재 육성, 산업 연계, 인구 유입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법적·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 개선과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수영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거점 돌봄 시설 필요, 군민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공간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군민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조성.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11(거창초등학교 내)
- 3) 사업기간 : 2024. ~ 2029.
- 4) 사 업 비 : 29,846백만원(국비*14,923 군비 9,923 기금**5,000) 세부내역 불임)
*국(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기금(소멸대응기금기초계정)
- 5) 사업내용 : 수영장(25m 5레인), 거점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 등 건립
- 사업규모 : 연면적 5,673㎡(지하1층 ~ 지상5층), 건축면적 5,942㎡

나. 취득 및 처분 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연면적				
계				5,673	23,098,000			
취득	건물	거창읍 중앙리 311 (거창초등학교 내)	학교 용지	5,673	23,098,000	2029	건물 신축	

*기준가격 산정 근거 : 건축비 + 철거비

- 건축비 : 3,945,823원×연면적 5,673.34㎡=22,386,959,000원

*건축단가 : 2024년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 건축공사비지수상승률(6.79%)참조

- 철거비 : 711,594,000원(24년 경남교육청 시설공사 예산 단가표 참고)

○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명	면 적(㎡)	비 고
계		5,673	
지하1층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324	
지상1층	수영장(25m 5레인), 조리실 겸 식당, 매점	1,378	
지상2층	돌봄교실(6실), 놀이공간, 사무실	876	
지상3층	동아리 및 방과후실(4실), 디지털실, 창의융합메이커실, 소·대강의실, 상담실	1,378	
지상4층	강의실(5실), 활동가실, 다목적 강당	1,378	
지상5층	카페, 옥상 녹화 공간	339	

다. 추진경과

- 1) 2024. 08.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 2) 2024. 10. ~ 2025. 9. :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추진 중)
- 3) 2024. 12. :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군민 설문조사
- 4) 2025. 02. : 거창초 학교운영위원회 방문 설명
- 5) 2025. 03. : 교육부 사업계획 변경(수영장 반영)
- 6) 2025. 07.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7) 2025. 08. :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 8) 2025. 09. : 학교 사용 부지 협의 완료

라. 향후계획

- 1)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공유재산 심의
- 2) 2025. 10. ~ 12. : 설계 공모 추진
- 3) 2026. 01. ~ 12. : 실시설계 추진
- 4) 2027. 01. ~ 2029. 0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9. 3. : 운영(예정)

마. 기대효과

- 1) 공익적 목적의 개방형 수영장 운영으로 주민 건강, 복지 증진
- 2) 학생 돌봄 공백 해소, 성인들의 평생 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교육·문화 복지 격차 해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수영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공공 수영장 필요, 맞벌이 가정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거점형 돌봄시설 수요 확대, 성인 대상 평생학습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육·문화 복지 격차 발생에 따라
- 수영장, 돌봄시설, 평생학습시설을 통합한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전 군민이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항 목	내 용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11(거창초등학교 내)
규 모	연면적 5,673㎡ / 건축면적 5,942㎡ / 지하1층~지상5층
총사업비	29,846백만원 (국비 14,923 / 군비 9,923 / 기금 5,000)
건축비	약 22,386백만원 (단가 3,945,823원/㎡ 기준)
철거비	약 711백만원 (경남교육청 단가 기준)

○ 사업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금액(백만원)	주요 산출 기준
총계	29,846	-
공사비	23,098	건축비 + 철거비 (단가 및 지수 상승률 반영)
설계비	1,172	총공사비의 4.59%+부가세 및 보험료 포함
부대비1	3,313	감리비, 설계공모, 운영설비, 측량조사 등
부대비2	35	제로에너지·녹색건축 등 인증 수수료
부대비3	6	설계 적정성 및 안전성 검토비
예비비	2,222	전체 사업비의 약 5% 수준

- 건축비는 2024년 공공건축물 단가 기준+공사비 지수 상승률(6.79%)를 반영하였으며, 철거비는 경남교육청 시설공사 단가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 기준에 따른 단가 적용 및 지수 보정으로 적정성을 확보함.
- 설계비는 총공사비의 4.59%(기본 효율+추가 효율)로 공공 발주사업 설계 대가 기준에 따랐으며 부가세 및 손해배상 보험료가 포함되었음.

- 부대비1의 경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분야별로 세분화하였으며, 설계공모 및 구현비용을 각각 설계비의 10% 및 9.03%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음.
- 부대비2, 3 및 예비비의 경우 인증 수수료는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BF인증 등에 관한 비용이며,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5% 수준으로 법적 기준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필수 비용을 반영하였음.
- 거창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통합적으로 충족시키는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써, 정책적·사회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짐.
- 특히, 수영장, 돌봄시설, 평생학습공간을 통합한 복합시설은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비 및 기금 확보를 통해 재정적 부담도 분산되어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 시행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운영에 대한 세부 전략 수립이 병행 되어야 하며
- 거창초등학교 부지 내 조성으로 중심지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차량 진출입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과 주차장 확보 계획이 필요해 보임.

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관내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나이를 상향함(안 제3조)
(현행) 34세 이하 ⇒ (변경) 45세 이하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9. 5.~9.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활성화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

☐ 재정부담 여부 : 2025년도 예산 20,000천원 확보

-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발생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애향장려금 지원 대상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1항 (지원대상)	34세 이하	45세 이하
신설 제3조제2항 (우선지원 기준)	없음	장기근무경력 소득수준 등 고려 가능
제3조제3항 (항 변경)	제2항	제3항

- 청년층 중심의 기존 지원대상(34세 이하)을 중장년층까지 확대(45세 이하)함으로써 지역 내 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며
- 우선지원 기준 도입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실질적 필요 대상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세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이번 조례 개정으로 35~45세 노동자도 포함되어 실질적 수혜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근무자 우선지원으로 기업 내 인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지원 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지역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개별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5조)
 - 1)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청년, 취업 취약계층 삭제
 - 2) 근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6호
- 나. 용어나 문장 정비, 법령 재기재 삭제함(안 제1조·제2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9. 5. ~ 9. 2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
-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조
- ☐ 재정부담 여부 : 필요시
 - 청년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원 사업 예산이 증가될 수 있음.
-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주요 변경점
제1조 (목적)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안정 기여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육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구체성과 포괄성 강화
제2조 (정의)	새로운 일자리 개발· 보급 및 연결	능력·적성에 맞는 일 자리 개발, 교육훈련, 취업·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 지원 포함	정책 수단의 다양성 확보
제5조제6호 (청년지원)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시	포괄적 “청년” 표현으로 변경	연령 기준 삭제
제5조제6호 (취약계층 정의)	학력경력 부족, 고령화 등	장애, 장기 실업, 이주민 등 추가로 확대	취약계층 범위 확대
제9조 (시행규칙)	규칙으로 정함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안 제1조를 보면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였고, 목적의 구체성과 포괄성이 강화되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에서 벗어나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질적 향상까지 포괄하여 정책 수단의 다양성을 확보 하였음.
- 안 제5조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을 삭제하였는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청년의 기준이 모호해짐.
- 취약계층 범위 확대는 사회적 포용성 강화로 긍정적으로 해석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湫)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2024. 1. 9.>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23. 12. 31.] [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0. 9.]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복지·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보증 재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2)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 3) 사 업 비 : 450백만원(군비)

- 2026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요구액	비 고
2026년	450	450	

- 4)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나. 부서의견

- 1) 대내외적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소비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 2)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보증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 3) 경남도내 타 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및 경남도와 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5. 검토의견

- 본 출연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군비 45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
- 거창군은 도내 군 단위 중 소상공인 수 2위, 보증잔액 2위, 출연금 규모 2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 군 단위 소상공인 수 대비 출연금 비율을 보면 거창군은 소상공인 수 대비 출연금 비율이 군 단위 상위권에 해당하며, 우리군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의령, 함안, 창녕군이 다소 높게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낮음.

시·군	소상공인 비중	시군 출연금('26년)		우리군 대비 금액 산출
의령군	0.7%	2	>	1.5
함안군	2.5%	6.5	>	5.6
창녕군	1.7%	4	>	3.8
고성군	1.7%	3.5	<	3.8
남해군	1.6%	3	<	3.6

시·군	소상공인 비중	시군 출연금('26년)		우리군 대비 금액 산출
하동군	1.6%	3	<	3.6
산청군	1.2%	2.5	<	2.7
함양군	1.2%	2.5	<	2.7
거창군	2.0%	4.5	=	4.5
합천군	1.3%	2	<	2.9

- 이는 출연금 산출 기준이 사업체수(5%)외에도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25%), 대위변제(25%), 재정자립도(10%), 지역내총생산(10%)로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 대상은 될 수가 없음.
-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대위변제 순증 금액이 61건에 9.4억원이며, 최근 5년간 대위 변제현황을 보더라도 대위변제액이 출연 금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증 리스크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됨.
- 보증지원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위함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책으로 검토됨.
-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금융 보증 확대는 군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며, 타 시군과의 협력 및 균형 있는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출연안은 타당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거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27. 시행) 제정에 따른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센터, 전담조직 및 전담창구를 정함(안 제8조~제10조)
- 마.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533,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8. 27.~9.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정부담 여부 : 2025년도 예산 533,000천원 확보

- 개정안 제5조 통합지원 사업에 따른 예산 소요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내 거주민이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음.

조 항	주 요 내 용
조례명 변경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돌봄 통합지원'으로 변경하여 포괄성과 명확성 강화
제2조 (정의)	통합지원, 대상자, 관련기관 등 용어 정의 명확화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매년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및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확보
제5조 (통합지원 사업)	방문진료, 주거지원, ICT활용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포함
제6조 (통합지원 제공)	군수의 책무를 정함.
제7조 (통합지원회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 기능 강화
제8조 (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제9조 (통합지원센터)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제10조 (전담조직 및 전담창구)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조직 및 창구 설치 가능
제11조 (교육 및 홍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제12조 (사무 위탁)	전문기관에 돌봄 필요도 조사·판정 업무 위탁 가능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전달체계의 명확화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것임.

○ 통합돌봄에 관한 비용추계를 보면 주로 지원사업, 회의 운영,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비용 발생 요인으로 2025년의 경우 통합돌봄사업비 대비 인건비·운영비가 64%를 차지함.

- 총사업비 및 연도별 예산 추계는 총 5년간 약 28.8억원이 소요되고, 연평균 약 5.76억원, 군비 부담률 약 70%, 도비 보조는 약 30% 수준이며, 매년 약 3~5% 수준의 점진적 예산 증가 추세임.

(단위:천원)

연도	총 소요액	군비	도비보조	전년 대비 증가율
합계	2,879,512	2,015,659	863,853	
2025	533,000	373,100	159,900	-
2026	559,000	391,300	167,700	+4.9%
2027	576,700	403,690	173,010	+3.2%
2028	595,462	416,824	178,638	+3.2%
2029	615,350	430,745	184,605	+3.3%

- 군비 부담이 높은 구조의 사업으로 통합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 및 성과 기반의 예산 운용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전담조직 구성, 지역계획 및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리 방안 마련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통합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므로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7.]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거창군 4세대 이상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효행을 적극 장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가짐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함(안 제1조~제4조)
 - 1) 4세대 이상 가정 ⇒ 3세대 이상 가정
 - 2) 70세 이상 직계존속 ⇒ 80세 이상 직계존속
- 나. 지원 대상 및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다. 지원의 세부기준·절차·서식 등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함(현행 제4조~제6조)
- 라.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함(현행 제7조·제8조)
 - 1) 지급중지 및 변환 등, 시행규칙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다. 예산조치: 2026년 예산 43백만원 확보예정
라.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 법리 검토
마.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9. 5.~9. 24.
 -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인구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 확대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재정부담 여부 : 2026년 예산 43백만원 확보예정

- 개정안 제3조 효도수당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 변화를 고려해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조례명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4세대 이상 가정	3세대 이상 가정 (8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주소요건	1년 이상 계속 거주	출생·입양 시 예외 인정
신청절차	효도수당 신청 후 검토·결정	동일, 단 변경 시 군수에게 통보 의무 명시
적 용 레	기존 수당 수급자는 유지	개정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기존 조례는 4세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그간 우리군 지원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대수	1	1	1	1-2	1	-

※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원대상 없음

○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가족제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 효도(장려)수당 등 지원 현황

- 효 장려 정책으로 점차 증가 추세임(2023. 67개소 ⇒ 2025. 74개소)

지원기준		지원액(연간)				효도대상						
세대	지자체 수	50만원 이하	50~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해당 없음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85세 이상	100세 이상	해당 없음
계	74	28	33	11	2	3	21	5	24	10	5	6
2세대	2	1	1					1			1	
3세대	40	23	14	2	1	1	6	3	19	10	1	
4세대	27	3	15	9		2	15	1	4		0	5
제한없음	5	1	3		1				1		3	1

※ 도내 효도수당 지급 : 8개 시·군(3세대 동거 4개소, 4세대 동거 4개소)

⇒ 3세대 동거 가정은 80세 이상 지원, 4세대 동거 가정은 70세 이상 또는 연령제한 없음

- 안 제4조에서는 출생 및 입양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서는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가족 형태 다양성을 반영하였음.
-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 대상 가구수 증가로 인한 예산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총 5년간 2억 3,500만원, 연평균 약 4,7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정책적 효과 대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 본 조례안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현실적이고 포용적인 개정안으로 보임.



관련법령 발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9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노인복지법」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취업 취약계층인 최종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 제공하고,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 나. 위탁참여인원 : 2명(예정)
- 다. 위탁사무
 - 1)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2)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등
- 라. 위탁기간 : 2026. 3. 1. ~ 2029. 2. 28.(3년)
-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바. 수탁자격 : 거창군에 소재하며 아래 기준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 1)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3)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3)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5) 「2025년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안내」

나.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10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1월
-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2월 중

라. 소요예산(2026년 기준) : 연 16,885천원(도 5,066, 군 11,819)

5.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경제활동 기회가 제한된 최종증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 고용이 아닌 권리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사 업 명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위탁사무	참여자 모집·교육·근태관리·인건비 지급 등 전반적 운영
위탁기간	2026. 3. 1. ~ 2029. 2. 28. (3년)
참여인원	2명
위탁방법	공개모집
수탁자격	거창군 소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단체 등
예산규모	연간 16,885천원(도비 5,066천원, 군비 11,819천원)

- 본 사업은 단순 노무 제공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며,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 경상남도 조례 등 상위 법령과도 정책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탁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 내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의 역량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더욱이 단순 고용이 아닌 권리 실현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됨.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10. 1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10. 10.

2. 제안이유

- 농업 분야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해 농업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확대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91-4, 91-5
- 2) 사업기간 : 2025. 10. ~ 2027. 12.
- 3) 사 업 비 : 31억원 정도(건축공사, 부지매입 및 부대공사 등)
- 4) 내 용 : 기숙사 건립(연면적 500㎡, 투룸형 10실 및 부대시설)

나. 취득 및 처분 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	소계	2필지		1,674	181,565	2026	
	토지	가조면 마상리 91-4	답	1,002	114,228		소유자 (문*인)
	토지	가조면 마상리 91-5	창고용지	441	55,301		소유자 (동***협)
	건축물		창고	231	12,036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처분	소계			231	12,036		철거
	건축물	가조면 마상리 91-5	창고	231	12,036		

다. 추진경과

- 1)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의사 확인 : 2025. 8.
- 2)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 동의서 제출 : 2025. 9.

라. 향후계획

- 1) 20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 : 2025. 9.
- 2) 취득재산 감정평가 실시 : 2026. 1.
- 3) 취득재산 토지보상협의 매수 : 2026. 2.

마. 기대효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로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농업 인력난 해소 및 농가 경영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숙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임.

○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항 목	내 용
위 치	가조면 마상리 91-4, 91-5
규 모	연면적 500㎡, 투룸형 10실 및 부대시설
사업비	약 31억원 (건축공사, 부지매입, 부대공사 포함)
기 간	2025년 10월 ~ 2027년 12월

- 취득면적 1,674㎡, 총사업비 31억원 정도 소요되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 대상임.
- 총사업비 31억원은 부지매입, 건축공사, 부대공사 포함이며, 군비 부담이 있긴 하지만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를 통해 국비 확보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기반 강화에 대한 투자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 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으나,
-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또는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 확정 전에 의결 받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 공모 신청 시점에 부지 확보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모 선정 이후에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그간 추진현황

- 2025. 9.26. : 기숙사 건립 공모 신청서 제출(거창군→경남도)
- 2025.10.16.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현장평가
- 2025.10.중순경 : 선정결과 통보